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0. 2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 10. 10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8. 10. 13

다. 상정일자 : 제1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8. 10. 27)

상정, 심사,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가. 제안이유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등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조례의 적용기준 명시 (안 제2조)

· 마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에 적용함

○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세입 (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

▶ 위탁수수료, 임대료수익, 주차료수익

▶ 이자 및 배당금, 관리비수익, 기타 잡수익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세출 (안 제5조)
 -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등 보조
 - 예비비 등 기타
-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잉여금에 대한 처리 명시 (안 제7조)
 -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함
 -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신승관 전문위원)

-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총당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임.
- 본 조례는 입법형식상 총 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특별회계 세입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 설관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한 시장의 대행사업 수익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세출의 범위를 마포농수산물시장의 관리수탁에 대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 등 기타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총당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시장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분리함으로써 일반회계의 명목상 재정규모가 과다하게 확대되던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